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58/2022/NĐ-CP

하노이, 2022 년 08 월 31 일

의정

베트남에 있는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

2015 년 06 월 19 일에 발행된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2015 년 06 월 19 일에 발행된 지방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19 년 11 월 22 일에 발행된 정부조직법 및 지방정부조직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 년 06 월 22 일자 법률 문서의 제정에 관한 법률; 2020 년 06 월 18 일자 법률 문서의 제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 개정 보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비정부기구의 등록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의정을 제정한다.

제 I 장

일반 규정

제 1 조. 조정 범위

이 의정은 베트남의 외국비정부기구(이하 "외국 비정부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록과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 증명서 발급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1. 이 의정은 베트남에서 개발 지원, 비영리 인도적 지원 및 기타 목적에 종사하는 외국비정부기구에 적용된다.

2. 이 의정은 관련 중앙 기관, 단체,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및 베트남 협력 기관에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 정의

이 의정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외국비정부기구"란 해외에서 합법적인 자본 출처가 있으며; 영리 및 기타 목적이 아닌 베트남에서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며; 베트남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재정적 기부, 자금 조달 또는 기금 마련을 하지 않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기구, 사회 기금 또는 사모 기금을 의미한다.
2. "베트남 협력 기관"이란 베트남에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해 외국 비정부기구와 협력하거나 외국비정부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합의한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한다.
3. "등록증"이란 이 의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을 등록하는 외국비정부기구에 발급하는 관할 기관의 확인서를 의미한다. 두 가지 종류의 등록증은 운영 등록증과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이 있다.
4. "대표 사무소"는 외국 비정부기구의 산하기관으로 외국 비정부기구의 위임에 따라 대표 업무를 수행한다.
5. "대표자, 대표사무소장"은 외국비정부기구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베트남의 법률 및 국가 관리기관 앞에 책임을 지는 외국비정부기구의 공식 대표자를 의미한다. 대표자, 대표사무소장은 외국인 또는 베트남 시민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 비정부 기구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1. 외국비정부기구가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2. 외국비정부기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3.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이 회원인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국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제 5 조. 외국비정부기구에 대한 금지된 행위들

1. 베트남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하고, 베트남의 국방, 안보, 사회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종교 및 기타 활동을 조직, 수행, 참여, 후원하는 행위
2. 개발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조직, 수행, 참여하는 행위.
3. 다른 나라의 반정부 활동, 테러 단체 및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4. 돈세탁 활동을 조직, 참여, 후원하는 행위 또는 돈세탁과 관련된 행위.
5. 베트남의 사회 윤리, 순풍, 미풍, 전통, 민족 문화 정체성에 반하고, 민족 단결의 파괴하는 다른 활동을 조직, 참여 및 후원하는 행위

제 6 조. 외국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1. 외국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베트남 법에 따라 운영을 등록한 외국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정보와 외국비정부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의 모음이다.

2. 외국 비정부기구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및 외교부의 공공서비스포털, 국가데이터베이스,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기관,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어 외국 비정부기구들의 운영 등록 및 관리에 있어 행정절차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외국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

a) 외국 비정부 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비정부기구가 베트남에서 운영을 등록할 때 설정된 정보;

-등록증 발급, 연장, 개정, 보완 또는 재발급 신청서류 의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 있는 사본 또는 전자 사본;

-정기 및 비정기 보고서;

-기타 관련 정보(있는 경우);

b) 외국 비정부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설정된다.

-등록증 발급, 연장, 개정, 보완, 재발급 신청 서류에 제공된 외국비정부기구의 정보;

-외국비정부기구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 정보;

-베트남 관리 기관이 제공한 정보;

-등록증에서 디지털화되고 표준화된 정보;

-이전에 확립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공유, 변환, 표준화된 정보.

4. 외국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데이트, 관리, 개발, 이용의 원칙:

a) 외국 비정부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저장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개발 및 사용된다.;

b) 외국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며, 정보기술의 표준과 기술규격을 준수하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호환성, 안전성, 투명성을 보장한다.

5. 외국 비정부 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관리, 개발, 제공:

a) 외교부는 외국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주관하며; 외국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한 후 온라인 형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안내하며; 외국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관할 국가관리기관,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외국비정부기구 및 등록증이 발급된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상임기관에게 장부 코드 및 식별 계정을 발급한다.

b) 관할 국가관리기관,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외국비정부기구 및 등록증이 발급된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상임기관은 외국 비정부 기구는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 및 개발할 수 있다;

c) 외교부, 관할 국가관리기관,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상임기관 및 등록증이 발급된 외국 비정부기구는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책임을 진다.

제 II 장

등록증 발급·연장·개정·보완·재발급·정지·종료 및 회수의 권한,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지역 및 분야, 등록증의 기간

제 7 조. 등록증 발급·연장·개정·보완·재발급·정지·종료 및 회수의 권한

외교부는 외국 비정부기구의 등록증을 발급, 연장, 개정, 보완, 재발급, 정지, 종료, 회수하는 기관이다.

제 8 조.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지역 및 분야

1. 외국 비정부 기구는 등록증에 명시된 분야에 따라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다.

2. 외국 비정부기구는 하노이시, 다낭시 및 호치민시 3 개 지역 중 하나에 01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3. 외국비정부기구의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 당, 국가 및 정치-사회단체의 본부에 위치하지 않는다.

제 9 조. 등록증의 유효기간

1. 운영 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 대표 사무소의 설립 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설립지의 법률에 따라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등록증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기한으로 연장되며, 설립지의 법률에 따라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III 장

등록증 발급, 연장, 개정, 보완, 재발급의 조건, 순서 및 절차

제 1 항. 운영 등록증 발급, 연장, 개정, 보완, 재발급의 조건, 순서 및 절차

제 10 조. 운영 등록증 발급 조건

외국비정부기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영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1. 설립지의 국가 및 영토의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인 자격을 가진다.
2. 베트남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명확한 운영 정관, 지침, 목적이 있다
3. 3년 동안 베트남의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
4. 베트남 대표자 제안이 있다.

제 11 조. 운영 등록증 발급 절차 및 순서

1. 외국 비정부기구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다음 문서를 포함하여 운영 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1 부를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a)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3a 에 따라 운영 등록증 발급 신청서 1 부;
- b) 정관 사본 01 부 및 외국 비정부기구의 법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01 부;
- c) 3년 내 베트남에서 진행될 예정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에 대한 상세 통계서 1 부;

d) 대표자의 승인 신청 서류 1 부에는 다음이 포함한다.

- 단체장이 서명하고 날인한 임명 결정서 1 부;

- 대표자로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 1 부;

- 그 사람이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그 사람이 지난 6 개월 이내에 상주한 국가의
권할 기관이 발급한 대표자로 추천된 사람의 사법적 이력서 1 부;

- 대표자로 추천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여권 사본 1 부. 임명된 사람이
베트남인인 경우 유효한 여권,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 부.

상기 서류에 포함된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이 회원인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과 함께 영사 합법화되어야 한다.

2. 0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비정부기구의 요청 서류 구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 비정부기구가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청한다.

3. 충분한 서류를 받은 후 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公安부,
기획투자부,내무부, 재무부, 베트남국가은행, 외국 비정부 기구가 운영을 등록한 분야의
전문 국가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 외국 비정부기구가 운영을 등록한 지방.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와 외국 비정부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을 승인하는 기관의
의견 수렴 문서를 보낸다.

4.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5.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 영업일
이내에 본조 제 1 항에 명시된 외국 비정부기구의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해야 한다.

6.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충분한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외교부는 서류를 심사하고 운영등록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통보한다. 운영 등록증은 본 의정에 따라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1 에 따라 발급된다. 심사는 서면의견을 요약하거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 회의를 개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a) 서류의 적법성과 완전성;

b) 베트남의 주장, 노선, 정책 및 부처, 지부 및 지역의 특정 개발 목표에 대해 외국 비정부기구의 목표, 운영 원칙의 적절성;

c) 외국 비정부기구의 법인 자격과 운영 과정;

d) 대표자의 신원, 이력;

đ 외국 비정부기구 활동의 사회-경제, 보안, 사회 질서에 대한 효과 및 영향.

7.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 비정부기구에게 운영 등록증을 전달한다. 서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2 조. 운영등록증 연장의 순서 및 절차

1. 외국 비정부기구는 운영등록증이 만료되기 최소 60 일 전에 다음을 포함하여 운영 등록증 연장 신청 서류 1 부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3a 에 따라 작성된 운영 등록증 연장 신청서 1 부;

b) 운영 등록증 원본 1 부;

c) 최근 3 년간 베트남에서 전개된 외국비정부기구의 활동과 향후 3 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요약한 보고서 1 부;

상기 서류에 포함된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2. 운영등록증의 연장 순서 및 절차는 본 의정의 제 11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운영등록증의 개정, 보완, 재발급 순서 및 절차

1. 외국 비정부기구는 다음 문서를 포함하여 운영 등록증의 개정, 보완 또는 재발급 신청 서류 1 부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본 의정에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3b 에 따라 개정·보완 요청 내용 또는 재발급 요청 사유(분실, 노후 또는 훼손 등)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 1 부

b) 구, 파손으로 인해 개정, 보완 또는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운영등록증 원본 1부. 원본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운영등록증 사본 1부;

c) 개정·보완·재발급 내용에 관한 문서.

2. 0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 기구의 신청 서류 구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비정부기구가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다.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운영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외국비정부기구의 신청 서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2 영업일 이내에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외국비정부기구가 운영을 등록한 지방·중앙직할시 인민 위원회, 운영등록증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비정부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을 승인하는 기관에게 의견수렴 문서를 보내야 한다.

4.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5.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본조 제 1 항에 명시된 외국 비정부기구의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외교부에 송부하여 심사한다.

6.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충분한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외교부는 서류를 심사하고 운영 등록증의 개정, 보완,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통보한다. 심사는 운영등록증의 개정·보완 및 재발급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의견을 요약하거나 심사 회의를 개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운영 등록증은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1 에 따라 개정, 보완, 재발급된다.

7.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25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 비정부기구에 개정·보충·재발급된 운영 등록증을 전달한다. 서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항목 2.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발급, 연장, 개정, 보완 및 재발급 조건, 순서 및 절차

제 14 조.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발급 조건

외국 비정부기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설립지의 국가 및 영토의 법률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2. 베트남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명확한 운영 정관, 지침, 목적이 있다.
3. 베트남에서의 장기 운영에 대한 약속과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이 정기적인 현장 관리 및 감독을 필요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서 최소 5 년 동안 베트남에서 진행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통계서가 있다.
4. 베트남 대표 사무소장의 제안이 있다.

제 15 조.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발급 순서 및 절차

1. 외국 비정부기구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다음 문서를 포함하여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1 부를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a)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3a 에 따라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발급 신청서 1 부;
 - b) 정관 사본 01 부 및 외국 비정부기구의 법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01 부;
 - c)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이 정기적인 현장 관리 및 감독을 필요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에서 5 년 내 베트남에서 진행될 예정된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통계서 1 부;
 - d)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신청 서류 제출 시점 이전 03년 연속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통계서 1 부 (있는 경우);
 - ㉔) 대표사무소장의 승인 신청 서류 1 부에는 다음이 포함한다:
 - 단체장이 서명하고 날인한 임명 결정서 1 부;
 - 대표사무소장으로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 1 부;
 - 그 사람이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그 사람이 지난 6 개월 이내에 상주한 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대표사무소장으로 추천된 사람의 사법적 이력서 1 부;
 - 대표사무소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여권 사본 1 부. 대표사무소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베트남인인 경우 유효한 여권,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 부.
- 상기 서류에 포함된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이 회원인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과 함께 영사 합법화되어야 한다.

2. 0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비정부기구의 요청 서류 구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비정부기구가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청한다.

3. 본조 제 1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비정부기구의 충분한 서류를 받은 후 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공안부, 기획투자부, 내무부, 재무부, 베트남국가은행, 외국 비정부기구가 운영을 등록한 분야의 전문 국가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 외국 비정부기구가 운영을 등록하고 대표 사무소의 본부를 두는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와 외국 비정부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을 승인하는 기관의 의견 수렴 문서를 보낸다.

4.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5.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 영업일 이내에 본조 제 1 항에 명시된 외국 비정부기구의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외교부에 송부하여 심사한다.

6.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충분한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외교부는 서류를 심사하고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통보한다.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은 본 의정에 따라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2 에 따라 발급된다. 심사는 서면의견을 요약하거나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 회의를 개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a) 서류의 적법성과 완전성;

b) 베트남의 주장, 노선, 정책 및 부처, 지부 및 지역의 특정 개발 목표에 대해 외국 비정부기구의 목표, 운영 원칙의 적절성;

c) 외국 비정부기구의 법인 자격과 운영 과정;

d) 대표사무소장의 신원, 이력;

đ) 외국 비정부기구 활동의 사회-경제, 보안, 사회 질서에 대한 효과 및 영향.

7.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 비정부기구에게 대표 사무소 설립 등록증을 전달한다. 서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6 조.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연장 순서 및 절차

1. 외국 비정부기구는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이 만료되기 최소 60 일 전에 다음을 포함하여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연장 신청 서류 1 부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3a 에 따라 작성된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연장 신청서 1 부;

b)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원본 1 부;

c) 대표 사무소 설립 등록증이 발급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전개된 외국비정부기구의 활동과 향후 5 년 동안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요약한 보고서 1 부;

상기 서류에 포함된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2. 대표 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연장 순서 및 절차는 본 의정의 제 15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7 조. 대표 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개정, 보완, 재발급 순서 및 절차

1. 외국 비정부기구는 다음 문서를 포함하여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개정, 보완 또는 재발급 신청 서류 1 부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본 의정에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3b 에 따라 개정·보완 요청 내용 또는 재발급 요청 사유(분실, 노후 또는 훼손 등)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 1 부;

b) 구, 파손으로 인해 개정, 보완 또는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대표 사무소 설립 등록증 원본 1 부. 원본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사본 1 부;

c) 개정·보완·재발급 내용에 관한 문서.

2. 0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기구의 신청 서류 구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비정부기구가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다.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외국비정부기구의 신청 서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기구의 신청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후, 2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외국 비정부기구가 운영을 등록하고 (대표사무소 본부 변경 시) 대표 사무소의 본부를 두는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비정부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을 승인하는 기관에게 의견수렴 문서를 보내야 한다.

4.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5.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본조 제 1 항에 명시된 외국 비정부기구의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외교부에 송부하여 심사한다.

6.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충분한 서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외교부는 서류를 심사하고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개정, 보완,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통보한다. 심사는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의 개정·보완 및 재발급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의견을 요약하거나 심사 회의를 개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은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2에 따라 개정, 보완, 재발급된다.

7. 본조 제 1 항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25 영업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외국 비정부기구에게 개정·보충·재발급된 대표사무소 설립 등록증을 전달한다. 서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IV 장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운영 정지, 종료 및 등록증 회수

제 18 조. 운영 정지

1. 외국 비정부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이 정지된다.

a) 등록증 만료 시 계속 운영의 경우;

b) 등록증에 명시된 분야 또는 지역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c) 등록된 거래 계정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2. 외국 비정부기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국가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는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을 정지할 것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의견수렴은 회의를 개최하거나 관련 국가 관리기관에게 의견수렴 문서를 보내는 형태로 이뤄진다. 외교부가 서면 의견을 수렴할 경우 외교부의 문서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기관은 외교부가 종합하고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각 기관간에 이견이 있으면 외교부는 통일을

위해 회의를 연다. 운영정지 결정은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외국 비정부기구에 통보한다.

3. 운영정지 결정 후 5 영업일 이내에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외국비정부기구에 통보한다.

4. 운영정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외국 비정부기구는 운영 정지 결정에 언급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시정 결과를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9 조. 운영 종료

1. 외국 비정부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강제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등록증을 회수해야 한다.

a) 본 의정의 제 5 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중 하나를 범하는 경우;

b) 등록증이 발급된 후 연속 12 개월 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

c) 본 의정 제 18 조 제 4 항의 운영정지 결정에 언급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외국 비정부기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국가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는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을 종료하고, 등록증을 회수할 것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의견수렴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견수렴 문서를 보내는 형태로 이뤄진다. 외교부가 서면 의견을 수렴할 경우 외교부의 문서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기관은 외교부가 종합하고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각 기관간에 이견이 있으면 외교부는 통일을 위해 회의를 연다.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종료 및 등록증 회수 결정은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외국 비정부기구에 통보한다.

3. 운영 종료 및 등록증 회수 결정이 있는 후 5 영업일 이내에,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외국 비정부기구에 운영 종료 요청을 통지하고, 등록증 회수를 수행한다.

4. 운영 종료 및 등록증 회수 결정을 받은 날부터 6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외국 비정부 기구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택, 직원, 작업 수단, 재정적 의무(있는 경우) 및 단체,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5. 외국 비정부기구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기 60 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스스로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국 비정부 기구는 외교부 및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발급된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며, 자산, 재무 검사를 보고하며,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완료한다.

제 V 장

외국 비정부기구의 권리와 의무

제 20 조. 외국 비정부기구의 권리

1. 베트남 법에 따라 세금, 상품수입 및 노동 허가서에 관한 권리 및 혜택을 받는다.
2.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운영하도록 허가된 상업 은행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서 베트남 동 또는 외화로 지불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한다.
3.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통해 외화 또는 베트남동을 받는다.
4.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5.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성과에 대해 표창을 받는다.
6. 베트남에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 스스로 운영을 종료한다.

제 21 조. 외국 비정부기구의 의무

1. 등록 및 운영하고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한다. 외국 비정부기구의 법률 위반 행위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2. 베트남 협력 기관과 협력하여 등록증에 명시된 지역 및 등록 분야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3. 등록증을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외국 비정부기구는 베트남에서 거래 계좌의 개설, 사용 또는 변경에 대해 통보한다.
4. 발급·연장·개정·보완된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45 영업일 이내에, 외국 비정부기구는 외국 비정부기구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운영 전개 계획을 통보한다.
5. 매년 정기 및 비정기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며, 외교부, 기획투자부, 산업 및 분야별 외국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가진 부처,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게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보낸다. 보고서는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5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기간은 보고서

기간의 마지막 달 18 일까지이다. 보고 데이터는 보고기간의 전년도 12 월 15 일부터 보고기간의 12 월 14 일까지 계산된다.

6. 변경 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외국비정부기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로 외국비정부기구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제 VI 장

국가 관리 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

항목 1.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

제 22 조. 외교부의 책임

1.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대외 주장 및 정책을 정부와 국무총리에게 참모하고 제안한다.
2.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발행하거나 권한에 따라 발행한다.
3. 외국비정부기구의 등록증 심사 및 발급, 연장, 개정, 보완, 재발급, 정지, 운영 종료, 철회 등을 주재한다.
4. 본 의정의 조정 범위에 속하는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한다.
5. 검사·점검 결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며,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6. 베트남 법률에 따라 불만과 고소를 해결한다.
7.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영한다.
8.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 정부보고정보시스템 및 정보 센터를 통한 연결 및 자료 공유, 정부와 국무총리의 지휘 및 운영 등에 대한 요청에 따라 매년 정기·비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보고서는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6 에 따라 작성된다. 정기보고서 제출기간은 보고기간의 마지막 달 25 일까지이다. 보고 데이터는 보고기간의 전년도 12 월 15 일부터 보고기간의 12 월 14 일까지 계산된다.
9. 정부, 국무총리가 지정한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10.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본 의정의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강화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제 23 조.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의 책임

1. 일반 책임:

a) 요청 시 외국 비정부기구의 등록증 발급, 연장, 개정, 보완, 재발급 및 운영 정지, 종료, 회수 서류 등을 심사하도록 협조한다.;

b)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분야에서 운영하는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c) 관리 범위 및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위반 사항을 검사, 점검 및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d)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한다;

đ) 외국 비정부기구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한다;

e) 할당된 기능과 임무에 따라 외국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관리하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부서 또는 산하 부서를 배정한다;

g) 외국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는 전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운영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에 따라 국내 비정부기구들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h) 매년 정기·비정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외교부 및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보내 통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보고서는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4 에 따라 작성된다. 보고서 제출기간은 보고기간의 마지막 달 18일까지이다. 보고 데이터는 보고기간의 전년도 12월 15일부터 보고기간의 12월 14일까지 계산된다.

2. 특정 책임:

a)公安부는 외국 비정부기구의 불법 활동을 방지 및 근절하고 외국 비정부기구의 보안 및 질서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을 지며; 정보를 보호하고 외국 비정부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데 있어 외교부와 협력한다;

b) 기획투자부는 외국 비정부기구의 원조 사용을 관리하고 지도할 책임을 진다;

c) 내무부는 외국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는 국내 협회, 사회 기금, 자선 기금 및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d) 재정부는 국가 예산 수입에 속하는 외국 비정부 원조에 대한 재정적 국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가 예산 수입에 속하지 않는 외국 비정부 원조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해 지도한다;

đ) 베트남국가은행은 외국 비정부기구의 원조와 관련된 은행, 소액 금융, 자금세탁방지, 테러지원의 분야에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정부·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1. 현지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안내하고 관리한다.
2. 요청 시 외국 비정부기구의 등록증 발급, 연장, 개정, 보완, 재발급 및 운영 정지, 종료, 회수 서류 등을 심사하도록 협조한다.
3. 현지 및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위반 사항을 검사, 점검 및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4.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한다.
5.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조연하고 관리하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외교 업무 참모 기관을 지정한다.
6. 매년 정기·비정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외교부 및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에 보내 통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보고서는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4 에 따라 작성된다. 보고서 제출기간은 보고기간의 마지막 달 18 일까지이다. 보고 데이터는 보고기간의 전년도 12 월 15 일부터 보고기간의 12 월 14 일까지 계산된다.

항목 2.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

제 25 조.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의 책임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는 부문간 협조 메커니즘으로, 베트남 우호단체 연합인 상임 기관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 비정부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해결책을 연구하고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2.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비정부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3. 외국 비정부기구에 관한 법률 문서에 대한 의견 제시에 참여한다
- 4.서류를 접수하고 관련 부처, 지부 및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며, 심사를 위한 외교부에 전달하기 위한 외국 비정부기구의 등록증 발급, 연장, 개정, 보완 및 재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외국 비정부기구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5.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사, 점검 및 처리하며, 외국 비정부기구들에게 운영정지 결정, 운영종료 결정 등을 접수하고 통보하며, 외국 비정부기구의 등록증을 회수한다.
6. 외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한다.
7.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기관, 관련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게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 분야 및 운영 영역을 통지한다
8. 베트남 협력 기관과 외국 비정부기구들에게 외국 비정부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제공한다.
9. 외국 비정부 업무에 대한 요청에 따라 매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정부보고정보시스템과 정보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며, 정부와 국무총리의 운영을 지도한다. 보고서는 본 의정에 따라 발행된 부록에 명시된 양식 07에 따라 작성된다. 보고서 제출기간은 보고기간의 마지막 달 25일까지이다. 보고 데이터는 보고기간의 전년도 12월 15일부터 보고기간의 12월 14일까지 계산된다.
- 10.국무총리가 지정한 외국비정부기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26 조. 베트남 협력 기관의 책임

외국 비정부기구의 발급된 등록증에 명시된 내용과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 비정부기구들과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제 VII 장

시행조항

제 27 조. 시행 효력

이 의정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12년 03월 01일에 발행된 제 12/2012/NĐ-CP 호 의정을 대체한다.

제 28 조. 경과규정

1. 본 의정이 발효된 날부터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12년 03월 01일에 발행된 제 12/2012/NĐ-CP 호 의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다.

2. 외국 비정부기구의 운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12년 03월 01일에 발행된 제 12/2012/NĐ-CP 호 의정에 따라 발급된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등록증은 만료될 때까지 상기 의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개정, 보완, 재발급되며, 이후 본 의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 등록증 또는 대표 사무소 설립 등록증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된다.

제 29 조. 시행 책임

1. 외교부는 본 의정의 시행을 지도하고 검사할 책임을 진다.

2.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산하기관장, 외국 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 지방·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베트남 우호단체연합 의장 및 관련 기관장들은 본 의정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수신처:

- 당중앙위원회 비서실;
- 국무총리, 부국무총리;
-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지방·중앙직할시 시의회, 인민위원회;
- 당중앙위원회 및 당위원회 사무실;
- 사무총장실;
- 국가주석실;
- 국가위원회 및 국회 위원회;
- 국회 사무실;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 감사;- 국가금융감독위원회,
- 협회 정책은행;
- 베트남 개발은행;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각 단체의 중앙기관
- 베트남 우호단체 연합
- 정부 사무실: 주임비서, 각 부주임, TTg 보좌관, 각 국, 각 부처, 산하 단위, 전자 포털 포털 총책임자, 관보;
- 보관; VT, QHQT (2). HQ.

정부 대표자
총리 대리 서명
부총리

Pham Binh Minh

부록

(2022년 8월 31일에 정부에 의해 발행된 제 58/2022/ND-CP 호 의정에 첨부한다)

제 01 호 양식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등록증의 양식
제 02 호 양식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의 양식
제 03a 호 양식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의 발급 및 연장 신청서의 양식
제 03b 호 양식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의 수정, 추가 및 재발급 신청서의 양식
제 04 호 양식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외국 비정부 원조 활동 관리 작업 보고서의 양식
제 05 호 양식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원조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활동의 진행 상황 관련 보고서의 양식
제 06 호 양식	외교부의 외국비정부기구 운영 등록 및 관리 상황 관련 보고서의 양식
제 07 호 양식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의 외국 비정부 작업 상황 관련 보고서의 양식

제 01 호 양식

외교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BNG-HD

하노이(Ha Noi), ...년...월...일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등록증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정부에 의해 발행된 제...호 의정에 근거하여;

조직 의 신청을 검토하여

결정:

외교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BNB-VPĐĐ

하노이(Ha Noi), ...년 ...월 ...일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정부에 의해 발행된 제...호 의정에 근거하여;

조직 의 신청을 검토하여;

결정:

제 1 조. 허락대상조직:

본사:

국적:

전화번호:

베트남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원조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락한다.

제 2 조. 조직의 베트남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제 3 조. 운영분야:

업종코드:

제 4 조. 운영지역:

제 5 조. 조직의 베트남 인원수:

외국인 인원수: ()명;

베트남인 인원수: ()명

제 6 조. 대표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제 7 조. 등록증은 일부터 일까지 유효하다.

제 8 조. ...년 ...월 ...일에 ()차 연장, 수정, 추가 및 재발급한다.

기관장 대신 서명
부기관장

제 03a 호 양식

조직명

하노이(Ha Noi), ...년...월...일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의 발급 및 연장

신청서

수신: 외교부.

1. 조직 관련 정보: (주소, 소재지, 연락처, 법인자격 관련 정보);
2. 조직의 원칙 및 운영목적 소개;
3. 조직의 역사와 발전과정 요약;
4. 자원 및 재정능력;
5. 조직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및 베트남인 인원수의 예상;
6. 조직의 베트남 대표자/대표사무소장 관련 정보(신청목적에 따른다);
7. 베트남에서 진행할 예정인 분야, 업종코드(*) 및 운영지역 관련 정보.

8. 구체적인 신청목적 명시;

9. 베트남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원조 활동을 진행할 때 법률의 규정 준수 서약;

(신청서에년월일에 정부에 의해 발행된 제...호 의정에 명시된 문서를 첨부한다.)

서명, 직위
(날인, 있는 경우)

(*) 분야 및 업종코드는 2018년 베트남 경제업종시스템목록에 따라 분류된다. (2018년 7월 06일에 국무총리에 의해 발행된 제 27/2018/QĐ-TTg 호 결정에 첨부하여 발행한다.)

제 03b 호 양식

조직명

하노이(Ha Noi), ...년...월...일

외국비정부기구의 베트남 운영/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 수정, 추가 및 재발급

신청서

수신: 외교부.

1. 운영/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 추가 및 수정사항;

2. 운영/대표사무소 설립등록증 추가, 수정 및 재발급 사유

(신청서에년월일에 정부에 의해 발행된 제...호 의정에 명시된 문서를 첨부한다.)

서명, 직위
(날인, 있는 경우)

제 04 호 양식

부처/인민위원회
(부처명/성)

번호: .../BC-부처/UBND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지역, ...년 ...월 ...일

...년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관리 작업

보고서

수신: - 외교부;
-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I.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관리 작업

- 등록증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운영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비정부기구의 수 명시;
- 복잡한 운영이 있는 조직 및 처리조치 명시(해당 조직의 활동 구체화);
- 의정 제 6장에 명시된 국가관할기관의 책임 수행에 대한 평가;
-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 관리 작업 중 관련 기관 간의 협조방식에 대한 평가; 해결책 제안

II. 외국 비정부 작업 현황 평가

- 외국 비정부 원조의 운영관리, 원조동원, 접수 및 관리 과정 중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명시;
- 이전 보고기간 대비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의 가치 및 효과;
- 각 후원조직의 효과 평가;
- 외국비정부기구가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중 주의사항

III. ...년 (익년) 외국 비정부 작업 계획 예상

- 익년 외국비정부기구의 서약이 있는 외국 비정부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및 외국 비정부 동원을 우선으로 촉구하는 부처/지방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관리, 원조동원 및 원조 중 주의사항 및 구체적인 조치 제안.

IV. 외국 비정부 작업 관련 건의사항

- 외국 비정부 관리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건의;
- 외국 비정부 원조활동의 관리 효과 개선조치 제안./.

장관/위원장 대신 서명

차관/부위원장

수신:

- 상기와 동일;
- 각 차관/부위원장;
- 각:
- 각 처/청:
- 유지: HC...

부록 I

...년 외국 비정부 원조 통계

(...년 ...월 ...일에 ...에 의해 발행된 제...호 공문에 첨부한다)

(산정단위: USD)

순서	후원조직/개인 (베트남어로 번역되지 않음)	국적	프로그램명, 프로젝트명, 비프로젝트명	분야	상세분야	성/현	서약	지출	파트너	파트너 성격	제 80/2020/N Đ-CP 호 의정에 따른 승인서 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합계									

비고: 원조는 미화로 계산할 것으로 통일된다. (현물 원조 포함)

*** 용어 설명:**

(4), (5): 운영분야: 2018년 베트남 경제업종시스템목록에 따라 분류된다. (2018년 7월 06일에 국무총리에 의해 발행된 제 27/2018/QĐ-TTg 호 결정에 첨부하여 발행한다.)

(10): 파트너 성격

- 중앙부처;
- 지방 정부;
- 베트남 비정부기구;
- 정치·사회조직, 단체;
- 공립사업부;
- 기타 (사회기업 등)

제 05 호 양식

조직명

- 수신: - 외교부;
- 기획투자부;
- 업종 및 분야별 외국비정부기구의 운영을 관리할
국가 기능이 있는 부처;
-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베트남 개발 지원 및 인도적 원조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활동의 진행 상황
관련

보고서

1. 보고 기간에 수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활동;
2. 혜택을 받는 개인 및 조직 수의 규모,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의 결과물에
관한 자료;
3. 보고기간 중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의 진행 출처 및 경비, 행정비용에 관한
자료;

	합계							
--	----	--	--	--	--	-----	-----	--	--	--

비고: 원조는 미화로 계산할 것으로 통일된다. (현물 원조 포함)

*** 용어 설명:**

(4), (5): 운영분야: 2018년 베트남 경제업종시스템목록에 따라 분류된다. (2018년 7월 06일에 국무총리에 의해 발행된 제 27/2018/QĐ-TTg 호 결정에 첨부하여 발행한다.)

(10): 파트너 성격

- 중앙부처;
- 지방 정부;
- 베트남 비정부기구;
- 정치·사회조직, 단체;
- 공립사업부;
- 기타 (사회기업 등)

제 06 호 양식

외교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BC-BNG

하노이(Ha Noi), ...년 ...월 ...일

...년 외국비정부기구 등록 및 운영관리 상황 관련

보고서

수신: 국무총리.

I. 개요

- 세계, 지역 및 국내 상황;

- 외국비정부기구의 활동

II. 외국비정부기구 등록 및 운영 관리 작업

- 등록증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운영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비정부기구의 수 명시;

- 복잡한 운영이 있는 조직 및 처리조치 명시(해당 조직의 활동 구체화);

- 외국비정부기구의 등록 및 운영 관리 작업 중 관련 기관 간의 협조방식에 대한 평가; 해결책 제안

III. 외국비정부기구 등록 및 운영 관리 현황 평가

- 외국비정부기구 등록 및 운영 관리 과정 중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명시;

- 각 외국비정부기구의 효과 평가;

-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행사 중 주의사항

IV. ...년 (익년) 등록 및 운영 관리 작업 계획 예상

- 익년 외국비정부기구의 서약이 있는 외국 비정부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및 외국 비정부 동원을 우선으로 촉구하는 부처/지방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 외국비정부기구 등록 및 운영 관리 중 주의사항 및 구체적인 조치 제안.

V. 건의사항

- 외국 비정부 관리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건의;

- 외국 비정부 원조활동의 등록 및 관리 작업 효과 개선조치 제안./.

수신:

- 국무총리;
- 중앙당사무실;
- 관공서;
- 부처:...
-
- 유지: HC...

장관 대신 서명
차관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실무위원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BC-UB

하노이(Ha Noi), ...년 ...월 ...일

...년 외국 비정부 작업 상황

보고서

수신: 국무총리.

I. 개요

세계, 지역 및 국내 상황

II. ...년 외국 비정부 작업 결과

1. 외국비정부기구의 활동

a) 원조활동

b) 주목할 만한 활동

2. 위원회 및 각 기관의 작업

a) 외국 비정부 작업 중 방향과 해결책 조언 및 제안 작업

b) 외국 비정부 작업 중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작업

c) 외국비정부기구에 관한 법률 문서 구축 참여 작업

d) 베트남 파트너 기관 및 외국비정부기구 관련 정보 전달 및 제공 작업

đ) 외국비정부기구가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중 주의사항

III. 공통 평가

IV. 외국 비정부 작업의 방향 및 임무

1. 외국 비정부 작업의 추세 예측
2. 방향 및 임무
3. 제안 및 건의

주임

수신:

- 국무총리;
- 중앙당사무실;
- 관공서;
- 부처:...
-
- 유지: ...